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92
----------	-------

발의연월일 : 2026. 9. 10.

발 의 자 : 최혁진 · 정혜경 · 김우영
윤준병 · 조계원 · 이주희
박민규 · 박용갑 · 서미화
박성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보호 대상에 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안인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폭행·협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보안인력은 의료행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폭행·협박자 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상(死傷)이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위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보안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해당 장비의 유지·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보안장비가 실제로 제 기능을 다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안인력을 폭행·협박으로부터의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 진료 방해 및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을

행하는 자를 제지하면서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보안장비 유지·관리 실태 점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등).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보안인력(의료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제지행위에 대한 면책) 보안인력이 제12조를 위반하는 자를 제지하여 발생한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의2를 제36조의3으로 하고,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보안장비의 유지·관리 실태 점검 의무)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36조제11호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설치된 보안장비의 유지·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안장비의 정상적

인 작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수리·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방법·주기, 점검 결과 기록·보관의 방법 및 보관 기간,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36조의2”를 “제36조의2제1항·제2항, 제36조의3”으로 한다.

제92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6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법률 제2123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92조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의4. 제36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123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92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지행위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를 위반하는 자를 제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안장비의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개설되어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점검을 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 · ② (생 략)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u>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보안인력(의료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신 설>	제12조의2(제지행위에 대한 면책) <u>보안인력이 제12조를 위반하는 자를 제지하여 발생한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u>
<신 설>	제36조의2(보안장비의 유지 · 관리 실태 점검 의무) ① 의료기

제36조의2(공중보건 의사 등의 고용금지) (생략)

관 개설자는 제36조제11호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설치된 보안장비의 유지·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안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수리·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방법·주기, 점검 결과 기록·보관의 방법 및 보관 기간,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공중보건 의사 등의 고용금지) (현행 제36조의2와 같음)

[illegible]

② · ③ (생 략) 제92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u><신 설></u> 2. ~ 4. (생 략) ③ · ④ (생 략) 법률 제21238호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 제92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의2. 제36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의3. (생 략) <u><신 설></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6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238호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 제9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제36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	--

2. ~ 4. (생략) ③ · ④ (생략)	<u>자</u>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